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62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임현숙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정816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6, 8 내지 11, 13, 14, 16, 20, 21번에 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2, 15, 17 내지 19, 22번에 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구분소유자들의 포괄적 동의나 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문서위조 내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위 행위가 사문서위조 내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제주시 ○○○○○○○○에 있는 ○○○○○○○○○○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재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2021. 8. 27.경부터 2021. 10.경까지 이 사건 콘도의 관리단 대표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6.경 이 사건 콘도 1층 관리사무소에서, 위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및 관리단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 집합건물 107호 구분소유자 김○○, 도○○이 관리단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관리인 선임 및 관리단 구성 등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사록을 작성하면서 권한 없이 위 의사록에 첨부된 '○○○○○○○○○○ 구분소유자 명단 및 참석 여부'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의 '참석여부' 란에 '○'라고 기재하고, '날인' 란에 구분소유자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2, 15, 17 내지 19, 22번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9명의 '참석여부' 란에 '○'라고 기재하고, '날인' 란에 각 구분소유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콘도 구분소유자 9명 명의로 된 이 사건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8.경 제주시 광양9길에 있는 제주시청 건축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시청 건축과 집합건물 관리인 신고 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문서가 첨부된 총회의사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

실을 모르는 제주세무서 소득세과 고유번호증 발급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문서가 첨부된 총회의사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2, 15, 17 내지 19, 22번 기재 각 명의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1. 7. 26.경 이 사건 콘도의 관리단 구성 및 대표 선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일 이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2, 15, 17, 18, 22번 기재 각 명의자의 명의로 ‘이 사건 콘도의 관리단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작성된 점(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② 피고인은 2018. 8.경 이 사건 콘도의 관리단 대표로 선임될 때에도 같은 양식의 동의서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위 각 동의서에 기재된 작성 일자에 비추어 해당 문서가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④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각 명의자의 경우 이들 명의로 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 각 명의자 중 한 명인 표 ○○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을 보면 위 각 명의자들도 동일한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2, 15, 17 내지 19, 22번 기재 각 명의자의 명의로 된 부분을 위조·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12, 15, 17 내지 19, 22번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

판사 ○○○ _____

판사 ○○○ _____

범 죄 일 랑 표

순번	일시	장소	명익자	전유부분 호실	비고
1	2021.7. 26.경	제주시 ○○○ ○○○○ ○○○ ○○○○○○○○○○ 집합건물 1층 관리사무소	한○○, 곽○○	103	
2	"	"	김○○, 도○○	107	
3	"	"	김○○, 이○○	109	
4	"	"	이○○, 김○○	112	
5	"	"	이○○, 신○○	113	
6	"	"	이○○, 신○○	201	
7	"	"	김○○	202	
8	"	"	이○○	203	
9	"	"	강○○	204	
10	"	"	강○○	206	
11	"	"	손○○, 김○○	207	
12	"	"	장○○, 김○○	214	
13	"	"	신○○, 이○○	217	
14	"	"	강○○, 강○○	218	
15	"	"	장○○, 김○○	301	
16	"	"	권○○, 곽○○	302	
17	"	"	장○○, 김○○	303	
18	"	"	이○○, 박○○	307	
19	"	"	표○○, 표○○	316	
20	"	"	강○○, 민○○	317	
21	"	"	김○○, 강○○	318	
22	"	"	장○○, 김○○	319	